의 결 번 호	제 2018 - 9호
의 결 연 월 일	2018. 10. 5. (제 7 회)

의결사항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통합징수예산 및 사옥운영예산 변경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8. 10. 5.

1. 의결주문

○ 통합징수 예산 및 사옥운영 예산 부족에 따른 **201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18년도 통합징수사업예산(2,873억원)이 11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공단 출연금 분담비율에 따라 87억5천7백만원 추가 출연 필요

*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국민연금 분담금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 결산	’18 예산			
		당 초 (A)	변 경 (B)	증감 (C=B-A)	증감율 (C/A)
국민연금기금	76,707	69,036	77,793	**8,757**	12.7

* 기관별 추가 분담금 산정내역 별지 p.4～5. 참조

○ 국민연금공단 임대사옥의 공실률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증가하여 1,060백만원 추가 지원 필요

3. 주요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바 출연금 추가 소요액 **87억5천7백만원 증액**,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10억6천만원 증액**

○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98억1천7백만원 감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제74조,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 및 제10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의2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다. 관계부처협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협의

*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심의

< 별 지 >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징수예산 및 사옥운영예산 변경-

2018. 10. 5.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계획 변경사유 및 내역 ····· 2

Ⅲ.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Ⅳ. 추가소요 현황 ····· 4

<붙임>

1. 관련법령 ····· 8

2. 기금운용계획 변경 타당성 체크리스트 ····· 11

3.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 13

1. 사업 개요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사업목적)**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통합징수(고지, 수납, 체납관리)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4대보험 고지관리(고지서 발송 등), 수납관리(자동이체·과오납환금 안내문 발송 등), 체납관리(체납처분, 체납 통지서 발송 등), 고객센터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출연금(건강보험공단 위탁)

□ **(사업근거)**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합의된 분담율: 건강보험 59.5%, **국민연금 28.0%**, 산재보험6.6%, 고용보험 5.9%

※ **분담비율**은 '인건비,경비,사업비' 등 **사업별 적용이 아닌 "일괄 적용"방안을 채택**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 **(사업목적)** 국민연금공단 보유사옥 관리·운영 및 임대사옥 수익률 제고

□ **(사업내용)** 국민연금 사옥(40개소) 관리·운영

□ **(사업시행방법)** 국민연금공단 위탁

□ **(사업근거)**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 내역

□ 변경사유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2018년 통합징수사업예산 대비 우편요금 증가 및 처우개선, 퇴직급여비 등 지급예산 부족에 따라 **87억5천7백만원 추가 필요**

- **'18년도 예산이 '17년도 대비 10% 삭감*** 및 **우편요금·인건비 인상 미반영**

  * ('17) 76,707백만원 → ('18) 69,036백만원(△10%)

·'18년도 인건비 처우개선 (2.6%,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임금인상률)
·우편요금 인상 ('17년 4월 300 → 330원, '18년 8월 등기 1,960 → 2,130원)

○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고지서 우편 발송 비용과 인건비를 지급하고자함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 **임대사옥 공실률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소요예산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증가

* 공단 공실률 : 12.8%('16년) → 9.0%('17년) → 7.7%('18.7월)

○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공공요금,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함

□ 변경내역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87억5천7백만원 증액

- 처우개선, 퇴직급여비 포함 인건비 5,541백만원 증액
- 우편요금 인상분 사업비 3,216백만원 증액

○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87억5천7백만원 감액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10억6천만원 증액

- 공공요금,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소요되는 공공요금및제세 1,060백만원 증액

○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10억6천만원 감액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변경			주요변경 내역
	계획현액	변경요구	증감	
합 계	**118,065,788**	**118,065,788**	**-**	
[7300]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03,699	503,699	-	
[7400]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197,217	207,034	9,817	
[7431]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45,561	46,621	1,060	
[451]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2,977	2,977	-	
[452]국민연금공단 본부지방이전	12,584	12,584	-	
[453]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30,000	31,060	1,060	
[110]인건비	5,662,081	5,662,081	-	
[210]운영비	19,131,990	20,191,584	1,060	
[01] 일반수용비	1,261,849	1,261,849	-	
[02] 공공요금및제세	10,151,000	11,210,594	1,060	-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부족 예산 확보
[03] 피복비	62,840	62,840	-	
[07] 임차료	33,200	33,200	-	
[08] 유류비	5000	5000	-	
[09] 시설장비유지비	2,418,031	2,418,031	-	
[12] 복리후생비	281,800	281,800	-	
[15] 관리용역비	4,876,000	4,876,000	-	
[16] 기타운영비	42,270	42,270	-	
[220] 여비	69,454	69,454	-	
[240] 업무추진비	8,300	8,300	-	
[320] 민간이전	1,021,062	1,021,062	-	
[430] 기타유형자산	964,113	964,113	-	
[710] 예비비 및 기타	3,143,000	3,143,000	-	
[7432]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40,147	40,147	-	
[7433]국민연금 복지사업	42,473	42,473	-	
[7478]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69,036	77,793	8,757	
[601]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69,036	77,793	8,757	
[350]일반출연금	69,036	77,793	8,757	
[02]사업출연금	69,036	77,793	8,757	-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부족 예산 확보
[7600]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21,177,900	21,177,900	-	
[9700]여유자금운용	96,186,972	96,177,155	△9,817	-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등 부족 예산 활용
[9720]여유자금운용(국민연금기금)	96,186,972	96,177,155	△9,817	
[972]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2,285,395	2,275,578	△9,817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285,395	2,275,578	△9,817	
[02]통화금융기관예치금	2,285,395	2,275,578	△9,817	-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등 부족 예산 활용
[974]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24,845,032	24,845,032	-	
[976]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37,056,545	37,056,545	-	
[977]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18,510,000	18,510,000	-	
[978]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13,490,000	13,490,000	-	

4. 추가소요 현황

□ 통합징수 사업예산 집행 현황

('18. 8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8 예산(A)	'18 소요액			과부족액 (A-B)
		집행액	향후 소요액	소계(B)	
계	**287,230**	**174,390**	**127,077**	**301,467**	**△14,237**
사 업 비*	80,214	55,668	33,242	88,910	△8,696
인 건 비	191,682	111,766	85,457	197,223	△5,541
경상경비	4,869	2,906	1,963	4,869	-
예비비	10,465	4,050	6,415	10,465	-

* 석면피해구제기금분담금(80백만원) 제외

□ 분담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88,888**	**193,092**	**4,204**	**69,036**	**77,793**	**8,757**	**14,539**	**15,789**	**1,250**	**14,767**	**14,793**	**26**
사업비계	47,821	52,025	4,204	22,323	25,539	3,216	4,711	5,961	1,250	5,359	5,385	26
사업비	47,821	52,025	4,204	21,266	24,482	3,216	4,521	5,771	1,250	5,133	5,159	26
콜센터도급비	-	-	-	1,057	1,057	-	190	190	-	226	226	-
인건비계	**127,232**	**127,232**	**-**	**45,645**	**51,186**	**5,541**	**9,669**	**9,669**	-	**9,136**	**9,136**	-
인건비	127,232	127,232	-	44,730	50,271	5,541	9,669	9,669	-	9,136	9,136	-
연금자체성과급	-	-	-	915	915	-	-	-	-	-	-	-
경상경비	**3,370**	**3,370**	**-**	**1,068**	**1,068**	**-**	**159**	**159**	**-**	**272**	**272**	**-**
예비비	**10,465**	**10,465**	**-**	**-**	**-**	**-**	**-**	**-**	**-**	**-**	**-**	**-**

□ 기관별 추가분담금 현황

수 입 항 목	추가 분담금 산정 내역
ㅁ 건강보험분담금	당초 188,888 → 변경 193,092백만원(증 4,204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 4,204백만원＝87,437백만원('18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도급비 미포함) * 59.5% －47,821백만원('18년도 건보 사업비 분담금)
ㅁ 국민연금기금분담금	당초 69,036 → 변경 77,793백만원(증 8,757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 3,216백만원＝87,437백만원('18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도급비 미포함) * 28% ＋1,057백만원(도급비) －22,323백만원('18년도 연금 사업비 분담금)
• 인건비분담금	• 5,541백만원＝172,922백만원{'17년도 통합징수 인건비 집행액(연금전환직원보수보전·퇴직급여충당·경평성과급 제외)} * 1.026(공통인상률) * 26% ＋4,142백만원(퇴직급여충당) ＋915백만원(연금전환직원보수보전) －45,645백만원('18년도 연금 인건비 분담금)
ㅁ 산재보험기금분담금	당초 14,539 → 변경 15,789백만원(증 1,250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 1,250백만원＝87,437백만원('18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도급비 미포함) * 6.6% ＋190백만원(도급비) －4,711백만원('18년도 산재 사업비 분담금)
ㅁ 고용보험기금분담금	당초 14,767 → 변경 14,793백만원(증 26백만원)
• 사업비분담금	• 26백만원＝87,437백만원('18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도급비 미포함) * 5.9% ＋226백만원(도급비) －5,359백만원('18년도 고용 사업비 분담금)

□ 연도별 기관별 분담금 세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건 강 보 험	국민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2018년	변경후	3,015 (100.0)	1,931 (64.1)	**778** **(25.8)**	158 (5.2)	148 (4.9)
	변경전	2,872 (100.0)	1,889 (65.8)	**690** **(24.0)**	145 (5.1)	148 (5.1)
2017년		2,856 (100.0)	1,799 (63.0)	767 (26.9)	143 (5.0)	147 (5.1)
2016년		2,813 (100.0)	1,755 (62.4)	767 (27.3)	147 (5.2)	144 (5.1)
2015년		2,776 (100.0)	1,728 (62.3)	758 (27.3)	150 (5.4)	140 (5.1)
2014년		2,701 (100.0)	1,680 (62.2)	739 (27.4)	149 (5.5)	133 (4.9)
2013년		2,664 (100.0)	1,659 (62.3)	723 (27.1)	149 (5.6)	133 (5.0)
2012년		2,586 (100.0)	1,607 (62.1)	705 (27.3)	145 (5.6)	129 (5.0)

※ 결산 기준('18년도는 예산 기준)

※ ( ) : 분담비율

- 분담비율은 확정된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 수행인력 총 2,541명에 대한 기관별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 결정('10.8월) : 건강 1,512명(59.5%), 연금 712명(28.0%), 근복 317명(12.5%-산재보험6.6%, 고용보험 5.9%)

□ 추가소요액 산출근거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 (당초) 69,036백만원 → (변경) 77,793백만원(8,757백만원 증)

◇ 추가소요 예산(8,757백만원) 산출근거

(2018. 8. 31.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A)	집행(B)	잔액* (C=A-B)	집행율(B/A)	예상 소요액(D)	과부족액 (C-D)
총 예산	287,310	174,390	112,920	60.7	127,157	△14,237
연금 출연금	69,036	48,829	20,207	70.7	28,964	△8,757

* '18년도 287,310백만원 예산의 현재 잔액 112,920백만원은 **'18. 11. 중 소진(예상)**

○ 산출근거(8,757백만원)

- (인건비) 5,541백만원 = 172,922백만원{'17년도 통합징수 인건비 집행액(연금전환직원보수보전 · 퇴직급여충당 · 경평성과급 제외)} * 1.026(공통인상률) * 26% + 4,142백만원(퇴직급여충당) + 915백만원(연금전환직원보수보전) - 45,645백만원('18년도 연금 인건비 분담금)

▶ **인건비 처우개선(2.6%) 반영**

- (사업비) 3,216백만원 = 87,437백만원('18년도 통합징수 사업비, 도급비 미포함) * 28% + 1,057백만원(도급비) - 22,323백만원('18년도 연금 사업비 분담금)

* **사업비 :** 국민연금 보험료의 정기고지, 수시, 독촉고지를 위한 **우편비용 및 서식제작 비용이 대부분**이며, 보험료 수납 수수료와 체납처분을 위한 **공공요금임**

▶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우편(300 → 330원) 및 등기요금(1,960 →2,130원) 발송 비용 증가 반영**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 (당초) 30,000백만원 → (변경) 31,060백만원(1,060백만원 증)

◇ 추가소요 예산(1,060백만원) 산출근거

(2018. 7. 31.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율 (B/A)	예상소요액 (D)	과부족액 (D-C)
총 예산	30,000	14,884	15,116	49.6	16,176	**1,060**
공공요금및제세	10,151	4,801	5,349	47.3	6,409	**1,060**
- 공공요금	6,063	3,593	2,469	59.2	2,939	**470**
- 재산세	2,479	763	1,716	30.8	1,751	**35**
- 종부세	1,609	445	1,164	27.7	1,719	**555**

○ 산출근거(1,060백만원)

- (공공요금) 470백만원＝6,063백만원('18년 계획액)-3,593('18.1~7월 공공요금 집행액)
  -2,939백만원('18.8~12월 공공요금 예상소요액)

  * 6,063백만원=5,624백만원('16년 결산)+605백만원(기금운용본부)-△166백만원(계수조정)

  ** 공단 임대사옥 공실률 : ('16) 12.8% → ('17) 9.0% → ('18.7월) 7.7%

  ▶ **공단 임대사옥의 공실률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 반영**

- (재산세) 35백만원＝2,479백만원('18년 계획액)-763(건물분 재산세 집행액)
  -1,751백만원(토지분 재산세 예상소요액)

- (종부세) 555백만원＝1,609백만원('18년 계획액)-445백만원(종부세 집행액)
  -1,719백만원(종부세 예상소요액)

  * 2,479백만원=[본부 250백만원]+[지사 2,035백만원('16년 결산)×{1+4.47%('1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2}+7백만원(용인사옥)]

    1,609백만원=1,486백만원('16년 결산)×{1+4.47%('1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2} -△12백만원(계수조정)

  ** (계획)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 '17년 4.47%, '18년 4.47%

  (실제) 공단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17년 7.82%, '18년 10.14%

  ▶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면적 등에 따라 산출되며, '17, '18년 공단 토지 공시지가가 계획 대비 상승하여 납부세액 증가 반영**

붙임 1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이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④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지출항목은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다음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체 변경할 수 있다.

③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의 재원으로 다른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법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출연금 요구서에 사업운영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붙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 타당성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체크리스트	검토 내용
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	○ **'18년 예산이 '17년 수준보다 일괄 10% 감액** – 우편요금 30원 인상에 따른 증액('17.4월, 사업비 대비 우편요금 점유율은 64%임), 인건비(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2.6% 인상) 증액으로 국민연금기금 출연금을 전년 대비 증액 출연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인건비 모두 10% 감액 편성됨
② 현재 추진해야할 시급성	○ **징수율 하락에 따른 막대한 재정손실 우려** – 월별 부과제도에서의 보험료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한데 따른 법적 문제 및 추후 소급고지에 따른 민원 혼란 발생 – 4대 보험료 정기·독촉고지서 등의 정상적인 발송 불가에 따른 징수 및 압류 불가 → 보험료 징수율 하락과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기금 손실 우려 ○ **근로자 임금체불로 노·사간 갈등 발생 및 사회 이슈화 예상** – 임금체불 등 노사정 합의사항 미준수로 노·사간 갈등 및 소송 예상 – 건보공단 임금체불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논란 확산
③ 기존사업 보완 여부	○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 업무는 **'11.1월부터 추진 사업**
④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18회계연도 국회 보건복지위 – 각 사회보험별 비용 분담률은 건강보험 59.5%, 국민연금 28.0%, 산재보험 6.6%, 고용보험 5.9%임 …(중략) …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징수업무량 대비 분담금을 초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담률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2018년도 동 사업의 출연금이 2017년 대비 10% 감액됨에 따라 통합징수비용이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2017년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⑤ 사업의 추진근거	○ 국민연금법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
⑥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 해당사항 없음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table>
<tr><th>체크리스트</th><th>검토 내용</th></tr>
<tr><td>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td><td>○ 임대사옥 공실 해소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 임대사옥 공실 해소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 사옥 공실률 현황 >
(단위 : %)
<table><tr><th>구 분</th><th>‘16년 평균</th><th>‘17년 평균</th><th>‘18년 7월</th><th>16년대비증감</th></tr><tr><td>공단 공실률</td><td>12.8</td><td>9.0</td><td>7.7</td><td>5.1</td></tr><tr><td>시장 공실률</td><td>13.2</td><td>12.0</td><td>13.2</td><td>-</td></tr></table>
○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세액 증가
- 공단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을 상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감소

< 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
(단위 : %)
<table><tr><th>구 분</th><th>‘16년</th><th>‘17년</th><th>‘18년</th></tr><tr><td>공단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td><td>7.70</td><td>7.82</td><td>10.14</td></tr><tr><td>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td><td>4.47</td><td>4.94</td><td>6.02</td></tr><tr><td>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td><td>5.08</td><td>5.34</td><td>6.28</td></tr></table></td></tr>
<tr><td>② 현재 추진해야할 시급성</td><td>○ 공공요금 및 제세 적기 납부 필요
- 매월 공공요금 납부 및 9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이후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예산 부족 예상</td></tr>
<tr><td>③ 기존사업 보완 여부</td><td>○ 해당사항 없음</td></tr>
<tr><td>④ 외부기관 지적사항</td><td>○ 해당사항 없음</td></tr>
<tr><td>⑤ 사업의 추진근거</td><td>○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td></tr>
<tr><td>⑥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td><td>○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붙임 3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

(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

비 고	'18 당초(A)	'18 변경		증감	
		요구	검토(B)	(B-A)	%
합 계	118,065,788	118,065,788	118,065,788	-	-
[7300]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503,699	503,699	503,699	-	-
[7400]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 등)	197,217	207,034	207,034	9,817	5.0
[7431]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	45,561	46,621	46,621	1,060	2.3
[451]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2,977	2,977	2,977	-	-
[452]국민연금공단 본부지방이전	12,584	12,584	12,584	-	-
[453]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	30,000	31,060	31,060	1,060	3.5
[110]인건비	5,662,081	5,662,081	5,662,081	-	-
[210]운영비	19,131,990	20,191,584	20,191,584	1,060	5.5
[01] 일반수용비	1,261,849	1,261,849	1,261,849	-	-
[02] 공공요금및제세	10,151,000	11,210,594	11,210,594	1,060	10.4
[03] 피복비	62,840	62,840	62,840	-	-
[07] 임차료	33,200	33,200	33,200	-	-
[08] 유류비	5000	5000	5000	-	-
[09] 시설장비유지비	2,418,031	2,418,031	2,418,031	-	-
[12] 복리후생비	281,800	281,800	281,800	-	-
[15] 관리용역비	4,876,000	4,876,000	4,876,000	-	-
[16] 기타운영비	42,270	42,270	42,270	-	-
[220] 여비	69,454	69,454	69,454	-	-
[240] 업무추진비	8,300	8,300	8,300	-	-
[320] 민간이전	1,021,062	1,021,062	1,021,062	-	-
[430] 기타유형자산	964,113	964,113	964,113	-	-
[710] 예비비 및 기타	3,143,000	3,143,000	3,143,000	-	-
[7432]국민연금제도운영 사업	40,147	40,147	40,147	-	-
[7433]국민연금 복지사업	42,473	42,473	42,473	-	-
[7478]국민연금 징수업무위탁사업	69,036	77,793	77,793	8,757	12.7
[601]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69,036	77,793	77,793	8,757	12.7
[350]일반출연금	69,036	77,793	77,793	8,757	12.7
[02]사업출연금	69,036	77,793	77,793	8,757	12.7
[7600]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등)	21,177,900	21,177,900	21,177,900	-	-
[9700]여유자금운용	96,186,972	96,177,155	96,177,155	△9,817	0.0
[9720]여유자금운용(국민연금기금)	96,186,972	96,177,155	96,177,155	△9,817	0.0
[972]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2,285,395	2,275,578	2,275,578	△9,817	△0.4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285,395	2,275,578	2,275,578	△9,817	△0.4
[02]통화금융기관예치금	2,285,395	2,275,578	2,275,578	△9,817	△0.4
[974]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24,845,032	24,845,032	24,845,032	-	-
[976]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37,056,545	37,056,545	37,056,545	-	-
[977]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18,510,000	18,510,000	18,510,000	-	-
[978]국민연금기금 기타유가증권매입	13,490,000	13,490,000	13,490,000	-	-